# 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3년 11월 27일 복지건설위워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11월 15일, 엄샛별 의원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11월 15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제247회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

제1차 복지건설위원회(2023년 11월 27일)

○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심사, 의결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## 가. 제안이유

 우리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 균형과 질적 향상의 실현을 돕고 저출생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며 우리 구의 모든 출생 가정에 출생축하금을 지원하여 출생 장려 분위기를 높이고자 함.

# 나. 주요내용

- 조례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로 변경함.
- 출산을 출생으로 변경(안 제1조부터 제9조).
- 출생축하금을 첫째아, 둘째아까지 확대(안 제6조).
- 출생・양육 지원 자문 위원회(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).

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가. 검토보고 : 전문위원 추병수

#### 나. 검토의견

#### 1) 개정 이유

본 개정안은 출산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우리 구 저출생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출생축하금 지원으로 인구 증가를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고자함

#### 2) 주요 내용

- 조례 제명을 「서울특별시 금천구 출생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」
  로 변경함.
- 출산을 출생으로 변경(안 제1조부터 제9조).
  - 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체의 구조적·종합적인 문제라는 인식변화를 유도하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출생으로 변경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, 관련 법령에 위배 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
- 출생축하금을 첫째아, 둘째아까지 확대(안 제6조).

## ○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폐지(2022. 8. 10)

-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에 따라 출산지원을 첫만남이용권으로 변경하고 첫째아와 둘째아에 대한 출산축하금을 폐지하고 셋째아 출산축하금을 70만원으로 변경함 (제6조제1항)
  - 출생축하금을 신설하여 첫째아 30만원, 둘째아 50만원 지원을 규정
  - 출생・양육 지원 자문 위원회(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).

- 구청장의 출생·양육 지원에 필요한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해당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
- 부칙 : 출생축하금의 지급은 2022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함.

#### 다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심각해져가는 인구 감소 및 저출생을 극복하고자 출생의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고 출생축하금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「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」등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다 판단됨.

**4. 질의 및 답변요지** : 생 략

**5. 토론요지** : 생 략

6.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**7. 기타 필요한 사항** : 없 음